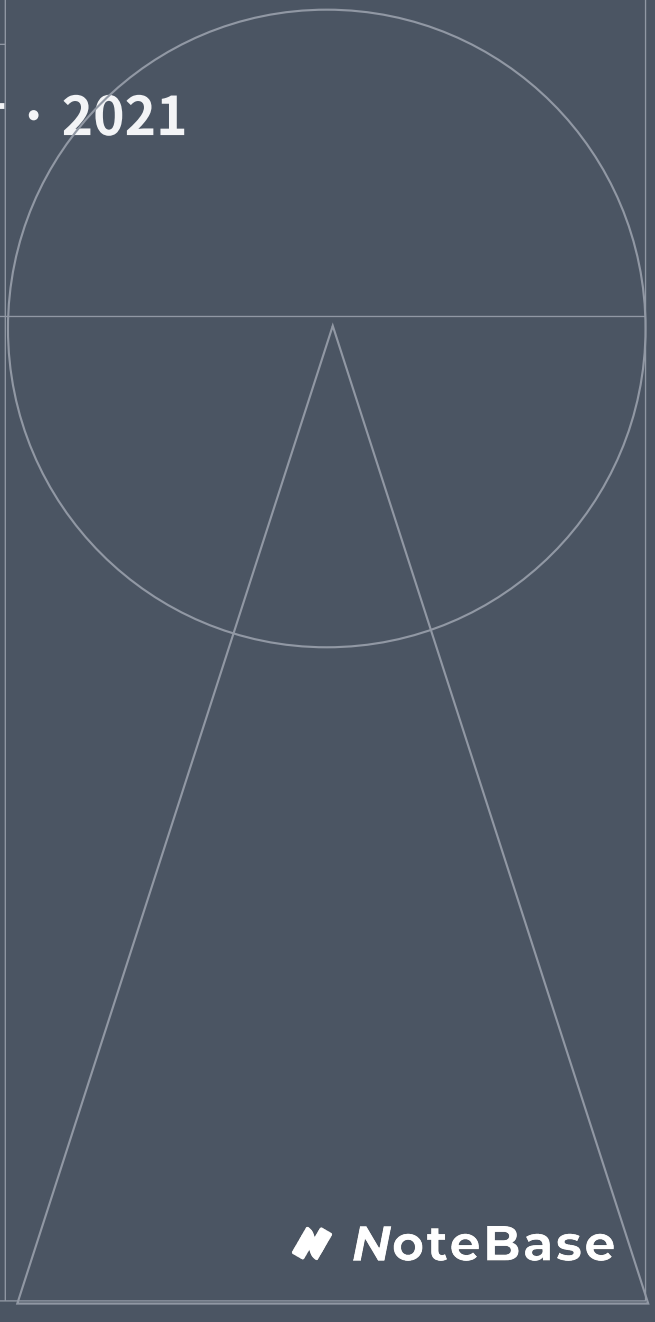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학 · 2021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학 · 2021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②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③ 장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④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정답 3번

①

광장·공원·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

②

하천·유수지·방화설비는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하천 · 유수지(遊水池) ·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NoteBase

③

장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④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 문화체육시설

NoteBase

문 2.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정원은?

<보기>
· 티볼리 분수 등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분수가 장관을 이루며 웅장한 콘서트를 연주하는 물의 오케스트라 정원이다.
· 상징과 부호가 가득 담겨 있는 그림처럼 뜻을 해독해야 하는 정원이다.
· 정원 도처에 황금 사과 모티브가 숨겨져 있다.

① 빌라 카스텔로 정원
② 베르사유 정원
③ 스토우 정원
④ 빌라 데스테 정원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티볼리에 있는 빌라 데스테 정원은 수많은 분수와 물의 힘으로 소리를 내는 **수력 오르간**으로 유명하다. **황금 사과**는 에스테 가문이 시조로 내세운 헤라클레스의 신화와 연결되는 상징이다.

핵심 풀이

물의 오케스트라: 빌라 데스테 정원은 이탈리아 티볼리에 조성된 르네상스 정원이다. 수많은 분수의 물줄기와 물소리가 어우러지며, 오르간 분수에서는 **물의 힘을 이용해 실제로 음악을 연주**한다. 따라서 보기의 '티볼리'와 '물의 오케스트라'는 빌라 데스테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상징과 황금 사과: 황금 사과는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서 용이 지키던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신화와 관련된다. 에스테 가문은 헤라클레스를 가문의 시조로 내세웠으므로, 이 신화는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정원의 조각과 분수에 담긴 이러한 신화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그림처럼 뜻을 해독해야 하는 정원'이라는 설명의 뜻이다.

빌라 카스텔로와의 구분: 빌라 카스텔로도 분수와 상징적 조각을 갖춘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이지만,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정원이다. **티볼리의 에스테 가문 정원**이라는 장소·가문의 대응에 수력 오르간과 황금 사과의 단서를 함께 연결하면 빌라 데스테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3.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는 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주제공원을 말한다.

②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③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④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정답 1번

①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선지는 지질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②

자연공원의 지정·관리는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 · 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 ·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 · 관리되어야 한다.

③

공원구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NoteBase

④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상호혜택을 창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 · 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NoteBase

문 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에는 약 3,900년 전 노을왕이 즉위하면서 나라동산인 유(囿)를 만들어 짐승을 키웠다는 기록이 있다.
· (㉡)에는 삼국시대 궁원 관련 기록으로 백제 제15대 진사왕 7년(391년)에 궁실을 중수하여 연못을 파고 가산을 쌓아 진귀한 물새를 키우고 화초를 가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① ㉠: 삼국사기, ㉡: 삼국유사
② ㉠: 동사강목, ㉡: 삼국사기
③ ㉠: 삼국유사, ㉡: 동사강목
④ ㉠: 대동사강, ㉡: 삼국사기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노을왕이 유(囿)를 만들어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은 **대동사강**에, 진사왕 7년(391년)의 연못·가산 조성 기록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빈칸별 해설

㉠ 대동사강: 보기에서 '약 3,900년 전 노을왕'의 일로 소개한 유(囿) 조성 기록은 '대동사강' 제1권의 '단씨조선기'에 해당한다. 유는 짐승을 기르는 동산으로, **노을왕이 나라동산을 만들어 짐승을 길렀다**는 내용이 문헌을 식별하는 단서이다.

㉡ 삼국사기: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에는 **진사왕 7년(391년)의 궁실 중수와 궁원 조성** 기록이 있다. 궁실을 다시 수리하면서 연못을 파고 가산, 즉 인공적으로 만든 산을 쌓았으며, 진귀한 새와 화초를 길렀다는 내용이다. 다만 보기에는 진사왕을 '제15대'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백제 제16대 왕이다. 이 왕대 표기의 오류와 별개로, 제시된 궁원 기록의 출처는 '삼국사기'이다.

㉠ 대동사강, ㉡ 삼국사기의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은/는 두 가지 이상의 생태계가 만나서 형성되는 일정한 폭의 선적인 지역을 말한다. (㉡)은/는 패치 내부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막아주며 다른 지역과는 독특한 (㉢)을 갖는다.

① ㉠: 주연부, ㉡: 주연부, ㉢: 생태적, 환경적 특성
② ㉠: 격리화, ㉡: 파편화, ㉢: 안정화된 환경적 특성
③ ㉠: 주연부, ㉡: 경관패턴, ㉢: 개체적, 환경적 특성
④ ㉠: 경관패턴, ㉡: 경관패턴, ㉢: 환경적 특성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두 생태계가 만나는 **주연부**는 폭을 가진 경계 지역으로, 패치 내부에 대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완충한다. 이곳에는 인접한 지역과 구별되는 **생태적·환경적 특성**이 나타난다.

빈칸별 해설

㉠ 주연부: 두 가지 이상의 생태계가 만나는 경계 지역이다.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일정한 폭을 가진 전이지역**이며, 숲과 초지가 맞닿는 가장자리가 그 예이다. 생태계가 서로 떨어지는 격리화나 서식지가 작은 조각으로 나뉘는 파편화와 구별된다.

㉡ 주연부: 패치는 주변과 구별되는 비교적 균질한 생태적 공간 단위이다. 그 가장자리의 주연부 식생은 햇빛과 바람 등의 영향을 조절하여 **패치 내부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패치 등의 공간적 배치를 뜻하는 경관패턴을 넣을 자리가 아니다.

㉢ 생태적, 환경적 특성: 서로 다른 생태계가 접하는 주연부에는 생물종 구성과 같은 **생태적 특성**뿐 아니라 빛·온도·습도와 같은 **환경적 특성**도 독특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체의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과 ㉡은 모두 주연부, ㉢은 생태적, 환경적 특성이므로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규모는? (단,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① 100명 이상
② 200명 이상
③ 300명 이상
④ 500명 이상

정답 4번

공통 해설

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하려면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NoteBase

문 7. 용도지역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로서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② 토지이용의 용도를 도시지역과 같은 '지역'에 두면서 특수한 성격의 용도를 '구역'이나 '지구'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도시지역과 도시계획권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산림지역의 4가지 기본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④ 국토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전국토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토지이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획한다.

정답 3번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oteBase

②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다. 용도지구는 경관·안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용도구역은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종합적인 조정·관리 등을 위해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선지의 '산림지역'은 이 네 가지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NoteBase

④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NoteBase

문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바비큐시설
② 실외사격장
③ 유스호스텔
④ 음식판매자동차

정답 2번

①
바비큐시설은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 포함되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o-Z1fAq0Qqs_NzlRuMJNXKiGxpiypnfq.webp

②
공원시설인 운동시설에 포함되는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므로 실외사격장은 제외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o3JNjNf4yX_rSzbiMKCkhlbcXHvMaFnF.webp

③
유스호스텔은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나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MQ32OXZDqIkM8PB-c-vEp1BBpjml-7vl.webp

NoteBase

④

편익시설에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포함**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47m2dVRRQPyPwPnGxVLIJi2X229_6gRV.webp

NoteBase

문 9. 부채 모양 지붕의 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창덕궁의 존덕정

② 사자림의 선자정

③ 창덕궁의 관람정

④ 졸정원의 여수동좌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창덕궁의 존덕정은 **육각형의 겹지붕 정자**이다. 같은 창덕궁 후원에서 부채꼴 지붕을 갖춘 정자는 관람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창덕궁의 존덕정은 육각형 평면에 **겹지붕**을 얹은 정자이므로 부채 모양 지붕의 정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덕궁의 부채꼴 정자는 관람정이다.

② O: 사자림의 선자정은 펼친 부채를 본뜬 **부채꼴 정자**이다. 정자의 형태뿐 아니라 창과 내부 탁자에도 부채 모양을 사용했다.

③ O: 창덕궁의 관람정은 **평면과 지붕이 부채꼴**인 정자이다. 육각형 겹지붕을 가진 존덕정과 형태가 구별된다.

④ O: 졸정원의 여수동좌헌은 **지붕을 펼친 부채 모양**으로 만든 정자이다. 창과 탁자 등에도 부채 모양을 적용하여 건물 전체의 형태를 통일했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방서는?

<보기>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④ 특수시방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은 전문시방서의 특징이다. 특정 공사에 적용한다는 표현보다 여러 공종의 기준을 종합한다는 점이 식별 기준이다.

개념 구분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여러 공종의 시공기준을 종합한 것이다. 특정한 공사의 시공이나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며, 보기의 **'모든 공종'과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이를 가리킨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전문시방서는 이러한 표준시방서를 기초로 공사에 필요한 공종들을 종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바탕으로 **개별 공사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공사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시험·검사 등 해당 공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특정한 공사'라는 표현만으로 공사시방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②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④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정답 3번

①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②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NoteBase

③

도시공원에서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이며, **자기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토석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흙과 돌의 채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④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에는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NoteBase

문 1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때 조사해야 하는 교목층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흉고직경
② 수고
③ 식피율
④ 근원직경

정답 4번

①
교목층을 구성하는 우점종의 **흉고직경을 최소·최대·평균값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별표 4 현존식생현황 중 교목층
현존 식생 현황
교목층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CxRSXUf7ks9LhKEmuiEkfa_2osoMAmvi.webp

②
교목층을 구성하는 우점종의 **수고를 최소·최대·평균값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별표 4 현존식생현황 중 교목층
현존 식생 현황
교목층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CxRSXUf7ks9LhKEmuiEkfa_2osoMAmvi.webp

NoteBase

③

교목층의 식피율은 **해당 층위 식생이 폴리곤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별표 4 현존식생현황 중 교목층
현존 식생 현황
교목층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CxRSXUf7ks9LhKEmuiEkfa_2osoMAmvi.webp

④

교목층의 기본 조사항목은 종명·수고·흉고직경·식피율로, **근원직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별표 4 현존식생현황 중 교목층
현존 식생 현황
교목층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CxRSXUf7ks9LhKEmuiEkfa_2osoMAmvi.webp

NoteBase

문 13. 생물서식공간계획으로서의 비오톱 공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형 하천에서는 여울과 소가 자연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② 생물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먹이식물 및 먹이사슬 관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③ 생물들의 산란, 이동, 은신, 먹이 등의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여 자연적 변동특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④ 생물서식공간에는 하천 치수 안정성, 생태적 민감성 등을 반영하여 이용공간의 완전한 배제 속에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비오톱을 조성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이용공간의 완전한 배제'가 잘못된 표현이다. 비오톱 공간계획에서는 생물서식처를 보호하면서 **생태적 민감성에 따라 이용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고, 영향이 적은 곳에는 관찰·학습 공간을 둘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여울은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빠른 곳이며, 소는 상대적으로 깊고 흐름이 느린 곳이다. 이러한 **수심과 유속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생물의 서식에 유리하므로, 자연형 하천에서는 물의 흐름과 하상 변화에 따라 여울과 소가 형성·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② O: 라이프 사이클은 생물이 태어나 성장하고 번식하는 생활사이다.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먹이와 서식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활사와 먹이관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먹이식물과 먹이사슬을 고려해야 생물이 먹이를 얻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식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③ O: 생물이 계속 서식하려면 먹이뿐 아니라 산란장, 은신처와 이동할 수 있는 연결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계절에 따른 수위·유량 변화처럼 **자연적으로 달라지는 환경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특정 시점의 환경만을 기준으로 조성하면 다른 시기에는 번식이나 이동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④ X: 비오톱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공간으로, 그 계획에서 치수 안정성과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모든 이용공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감한 핵심 서식처는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에는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로·생태학습 공간 등을 배치하는 등 **보전 필요성에 따라 이용을 제한·조정**해야 한다.

NoteBase

문 14.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상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보기>를 적용한다. ㉠에 해당하는 값은?

<보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2.0%
광장	㉠

① 0⊠0.5%

② 0.5⊠1.0%

③ 1.0⊠2.0%

④ 2.0⊠4.0%

정답 2번

NoteBase

공통 해설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광장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0.5~1.0%**를 적용한다.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첨부
조경포장공통(KCS 34 60 05:2024) 1.4.1(3)① 표 1.4-1
1. 일반사항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mC2PyE9PTXzTHFmdNA1dK12qxgh7vQ9.webp

NoteBase

문 15. <보기>에서 하절기(6~8월)에 개화하는 수종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산수국
ㄴ. 배롱나무
ㄷ. 생강나무
ㄹ. 미선나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산수국과 배롱나무는 **여름에 꽃을 피우는 수종**이다. 생강나무와 미선나무는 봄에 개화하므로, 꽃이 피는 계절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해설

ㄱ. 산수국: 주로 **7~8월에 개화**하므로 하절기 개화 수종에 해당한다.

ㄴ. 배롱나무: 주로 **7~9월에 개화**하여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다. 개화기에 7~8월이 포함되므로 문제의 하절기 조건에 해당한다.

ㄷ. 생강나무: 주로 **3~4월에 노란 꽃**을 피우는 봄 개화 수종이다. 따라서 6~8월에 개화하는 수종으로 고르지 않는다.

ㄹ. 미선나무: 주로 **3~4월에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봄 개화 수종이다. 따라서 하절기 개화 수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절기에 개화하는 수종은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④ 사전환경성검토

정답 3번

공통 해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2025.10.1>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문 17. 녹화식물 재료 중 부착형이 아닌 것은?

① 송악

② 줄사철나무

③ 능소화

④ 노박덩굴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노박덩굴은 줄기가 지지물을 감아 올라가는 **감기형**이다. 기근이나 흡착근으로 표면에 붙어 올라가는 부착형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송악은 줄기에서 생기는 **기근**으로 나무나 바위 표면에 붙어 올라가므로 부착형이다. 기근은 줄기에서 나와 공기 중에 노출된 뿌리로, 송악에서는 지지물에 몸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O: 줄사철나무는 줄기에서 여러 개의 **공기뿌리**가 나와 다른 나무나 바위에 붙어 자라므로 부착형이다. 줄기 자체로 지지물을 감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이용해 표면에 고정된다.

③ O: 능소화는 가지에 발달한 **흡착근**으로 다른 물체에 붙어 올라가므로 부착형이다. 흡착근은 지지물 표면에 붙는 기능을 하는 뿌리이다.

④ X: 노박덩굴은 부착형이 아니라 **줄기 자체가 지지물을 감아 올라가는 감기형**이다. 기근이나 흡착근으로 표면에 붙는 방식과 달리, 줄기가 지지물을 둘러 감으면서 위로 뻗는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잔디의 병충해 현상은?

<보기>
· 주로 고온 다습한 7~8월이나 5~6월 또는 9~10월에 잔디의 잎에 발생된다.
· 오렌지 갈색의 점무늬가 생기고 이 반점에서 커피가루 같은 분상물질인 포자를 비산하게 된다.

① 녹병
② 황화병
③ 입고병
④ 반엽병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잎의 오렌지 갈색 반점에서 **가루 같은 포자가 날리는 현상**은 녹병의 특징이다. 단순한 잎의 변색보다 포자의 색과 분상 형태가 병을 구별하는 결정적 단서이다.

핵심 풀이

발생 조건: 보기에서는 고온 다습한 7~8월과 5~6월 또는 9~10월에 잔디 잎에서 발생한다고 제시한다. 잎이 젖어 있는 환경은 녹병균 포자의 발아와 감염에 유리하다. 다만 발생 시기와 습도만으로는 다른 잔디 병과 구별하기 어렵다.

병징 판별: 녹병은 잎에 오렌지색이나 갈색의 작은 포자 덩어리가 생기는 곰팡이병이다. 이 부분에서 잎 표면이 터지면 포자가 가루처럼 드러나고, 바람이나 접촉에 의해 쉽게 떨어져 퍼진다. 보기의 '커피가루 같은 분상물질'은 이러한 **녹병균의 포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단순히 잎이 누렇게 되거나 색 무늬가 생긴다는 점이 아니라, **반점에서 유색 포자가 비산한다는 점**으로 녹병을 식별한다.

NoteBase

문 19. 현존하거나 기록에 남아있는 정원과 그 정원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페리스틸리움 - 인도

② 사자의 정원 - 스페인

③ 빌라 란테 - 프랑스

④ 스타우어헤드 정원- 이탈리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자의 정원은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중정이다. 중앙의 사자상 분수와 이를 둘러싼 회랑이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페리스틸리움은 고대 로마 주택에서 **기둥이 늘어선 회랑으로 둘러싼 중정**을 말한다. 폼페이의 주택 정원에서 볼 수 있으므로, 이 문항의 국가 연결은 인도가 아니라 이탈리아로 고쳐야 한다.

② O: 사자의 정원은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이슬람식 중정이다. 중앙의 사자상 분수와 십자형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을 기둥과 아치로 이루어진 회랑이 둘러싼다.

③ X: 빌라 란테는 **이탈리아 바냐이아**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원이다.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와 짝지어야 한다.

④ X: 스타우어헤드 정원은 **영국 잉글랜드의 윌트셔**에 있는 풍경식 정원이다. 이탈리아가 아니라 영국과 짝지어야 한다.

NoteBase

문 2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시농업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형 도시농업
②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③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④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정답 1번

①

법정 유형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 도심형, 농장형·공원형,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다. **정원형 도시농업은 법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 ·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 · 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 ·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 · 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 · 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 · 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은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 · 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NoteBase

③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은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농장형 · 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④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은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NoteBase